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32
----------	-------

발의연월일 : 2026. 1. 30.

발 의 자 : 위성곤 · 임호선 · 김종민

정태호 · 김원이 · 김승원

강득구 · 채현일 · 장철민

복기왕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복잡한 사회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민원인이 복합적인 민원 접수를 위하여는 여러 부서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이에 행정기관에서 하나의 창구 또는 주무부서에서 전담하여 민원을 처리하도록 원칙을 정하는 것임.

또한 국민 중심의 민원 행정을 실현하고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행정기관의 장이 반복 또는 중복되는 민원과 고충민원을 예방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민원 인식 개선 등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 접수를 위하여 여러 부서를 방문

하거나 여러 부서에 중복하여 민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접수된 민원을 하나의 창구 또는 주무부서에서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전담처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신설).

나. 행정기관의 장은 반복 또는 중복되는 민원과 고충민원을 예방하고 국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다.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민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처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적을 확인·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 접수를 위하여 여러 부서를 방문하거나 여러 부서에 중복하여 민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접수된 민원을 하나의 창구 또는 주무부서에서 전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전담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반복 또는 중복되는 민원과 고충민원을 예방하고 국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민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처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중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을 “개선 상황, 운영 실태

및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적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신설>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 접수를 위하여 여러 부서를 방문하거나 여러 부서에 중복하여 민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접수된 민원을 하나의 창구 또는 주무부서에서 전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전담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 ② (생략)	② ·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① 행정기관의 장은 반복 또는 중복되는 민원과 고충민원을 예방하고 국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설>	제40조의2(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민 원행정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의 <u>개 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u> 확인·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 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u>무원 등을 대상으로 민원에 대 한 인식 개선 및 처리 방법 등 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u>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① ----- ----- ----- -----<u>개 선 상황, 운영 실태 및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적을</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